

론스타 사건에 대한 실체적 및 절차적 쟁점 분석 - ICSID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of the Lone Star Case
With a Focus on the ICSID Arbitral Award

장석영*

Sok Young CHANG

〈목 차〉

- I. 서론
 - II. 론스타 사건과 국제투자분쟁해결
 - III. 론스타 사건에 대한 ICSID 중재판정: 관할권 및 실체적 쟁점
 - IV.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절차적인 문제
 - 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론스타 사건, 국제투자분쟁해결(ISDS), ICSID, 투자자-국가중재, 중재판정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박사, 국제법 전공), sychang@korea.ac.kr.

I. 서론

론스타(Lone Star)가 한국을 상대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한 지 약 10년만인 2022년 8월 31일 이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이 나왔다.¹⁾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은 한국을 상대로 처음 제기된 국제투자중재 사건이었으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이를 다시 하나금융에 매각하며 일명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먹고 튀었다는 논란이 있었던 론스타에 한국이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중재판정이 나오면서 론스타 사건은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²⁾ 기존 연구는 양측의 구체적인 주장과 법리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중재판정 선고 이후 법무부는 중재판정문과 분쟁당사자 양측의 준비서면을 모두 공개하였으며, 이제 쟁점별로 양측의 입장과 중재판정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론스타 사건의 실체적 및 절차적 쟁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론스타 사건의 배경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중재판정에 담긴 관할권 문제 및 실체적 쟁점에 관한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분석할 것이며, 쟁점마다 론스타 및 한국 양측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었고 중재판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론스타 사건의 실체적 및 절차적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하여 검토함으로써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론스타 사건에 대한 ICSID 중재판정의 내용을 세부 쟁점별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재판정 이후 남은 절차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Award, 2022 (이하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2) 론스타 사건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김희준, “론스타·한국정부간 ISD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정혜련, “론스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사건에 대한 소고 - 론스타의 ISD 과정과 우리정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제5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오현석, “투자의 적법성과 ISD 관할에 관한 연구 - 론스타 사건을 중심으로 -”, 『법조』, 제69권 제1호, 법조협회, 2020 등이 있다.

II. 론스타 사건과 국제투자분쟁해결

1. 론스타 사건의 배경

매우 복잡한 사건이지만 간단하게 사건의 배경을 소개하면, 2003년 론스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던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1조 3,800억 원에 인수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었다.³⁾ 곧이어 론스타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외환은행 계열사인 외환카드의 주식도 취득하였다.⁴⁾ 이후 외환은행의 주가는 급등하였고, 론스타는 2006년부터 외환은행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약 5조 9천억 원에 외환은행 인수에 합의하였다.⁵⁾ 그러나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면서 외환은행 인수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지연되었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홍콩상하이은행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였다. 이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⁶⁾ 론스타는 계속해서 외환은행의 매각을 시도하였고, 결국 2010년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3조 9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⁷⁾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취득에 대한 승인 검토에 들어갔지만,⁸⁾ 2011년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가 외환카드 주식 취득 당시 주가를

3)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paras. 151, 157.

4) *Ibid.*, para. 170.

5) *Ibid.*, paras. 181, 188.

6) *Ibid.*, paras. 189-190.

7) *Ibid.*, para. 191.

8) 은행법 제1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은 2002년 당시 은행법과 현행법의 내용이 동일하다).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방법·세부기준과 제3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
 2.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조작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외환은행의 매각이 지연되면서 2012년이 되어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완료되었다.⁹⁾ 이후 론스타는 한국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21일 한국을 상대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하였다.

2. 국제투자분쟁의 해결방식

(1) 중재를 통한 국제투자분쟁의 해결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에 발생한 분쟁은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에 발생한 국제투자분쟁이며, 국제투자분쟁은 일반적으로 국제투자중재를 통해서 해결한다.¹⁰⁾

국제투자중재는 중재의 한 유형으로, 먼저 중재(arbitration)란 분쟁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재는 국내중재, 국가간 중재, 국제상사중재, 국제투자중재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국내중재가 한 국가 안에서 같은 국적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중재라면, 국가간 중재는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중재이다. 국제상사중재와 국제투자중재는 모두 기업이 관련된 경우가 많고, 국제상사중재가 계약상 의무 위반을 다루는 서로 다른 국적의 개인 또는 기업 간 중재라면, 국제투자중재는 양자투자조약(Bilateral International Treaty, BIT) 등 국제투자협정 위반에 따른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과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중재를 의미한다.¹¹⁾ 기업과 관련하여 국제중재라는 말이 언론에서 언급될 때 이는 국제상사중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투자중재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중재를 의미하고, 한쪽 당사자가 국가인 것이 특징이다.

국제투자중재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국과 투자유치국 간에 체결한 BIT 등 국제투자협정의 분쟁해결조항에 근거해서 제기되며, 대다수의 국제투자협정은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해결방식으로 국제투자중재(투자자-국가중재)를 규정하고 있다.¹²⁾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에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의

3.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의 규모
4.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진성에 기여할 가능성.

9)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paras. 192-193.
10) 국제투자중재(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는 투자자-국가중재(Investor-State Arbitration), 국제투자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지만, 이 논문에서는 국제투자중재로 부르기로 한다.
11) 국제상사중재와 국제투자중재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성룡·안건형, “상사중재와 투자조약중재에 관한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 신희택,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투자중재 - ICSID 협약에 의한 투자협정중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참조.
12) 일반적으로 국제투자협정은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국가간 분쟁해결(계약당사자 간 분쟁해결)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한쪽 계약당사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국적국이 투자유치국과 체결한 국제투자협정의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제투자중재는 ICSID 중재와 ICSID 외 중재로 나뉘볼 수 있는데, ICSID 협약(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를 ICSID 중재라고 하고,¹³⁾ ICSID 외 중재로는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 ICC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ICSID 중재이다.¹⁴⁾

(2) 론스타 사건의 경우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내 및 국제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론스타 관련 국제중재 사건에는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에 이루어진 국제상사중재도 있고,¹⁵⁾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에 이루어진 국제투자중재도 있다. 이 중 본 글에서 다루고 있는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국제투자중재 사건이다.

론스타 사건의 중재 신청인은 하나의 법인이 아니라 LSF-KEB를 포함한 8개 론스타(미국계 사모펀드) 계열사이며, 모두 벨기에 법인(한 개 법인만 룩셈부르크 법인)이고, 이들을 중재판정문에서 론스타로 통칭하고 있다.¹⁶⁾ 외국인 투자자인 론스타의 투자를 유치한 투자유치국은 한국이므로 론스타는 벨기에와 한국 간에 체결된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경제연합 양자투자조약(이하 ‘2011년 한-벨기에 BIT’)의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제8조와 ICSID 협약 제36조에 근거하여 한국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였으며,¹⁷⁾ 양측이 모두 계약국인 ICSID 협약에 따라 제기된 ICSID 중재이므로 중재절차에 ICSID 협약과 ICSID

13)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1966년 ICSID 협약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재기관이다.

14) 2022년 7월 31일까지 알려진 1,229건의 사건 중에서 59.3%에 해당하는 729건의 사건에서 ICSID 협약 또는 ICSID 추가절차규칙이 적용되었고, 31%에 해당하는 381건의 사건에서 UNCITRAL 중재규칙이 적용되었다 (UNCTAD,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Navigator: full data release as of 31/07/2022 (excel format), available at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dispute-settlement>).

15) *LSF-KEB Holdings SCA v. Hana Financial Group, Inc.*, ICC Case No. 22221/CYK/PTA.

16)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paras. 31-40.

17) 2011년 한-벨기에 BIT 제8조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3.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이 조 제2항의 절차에 회부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된다.

가. 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 투자분쟁해결본부”;

ICSID 협약 제36조 제1항

“제36조 (1) 중재절차를 제기하고자 하는 계약국이나 계약국의 국민은 그러한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요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동 요청서 사본을 타방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중재절차규칙이 적용되었다.¹⁸⁾

Ⅲ. 론스타 사건에 대한 ICSID 중재판정: 관할권 및 실체적 쟁점

1. 분쟁당사자의 주장

(1) 론스타의 주장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 지연 및 매각가 인하 등 부당한 개입이 있었고, 한국 정부가 면세 혜택을 거부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상대로 미화 약 4조 7천억 달러에 2013년부터의 이자를 합산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하였다.

외환은행의 매각 관련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1976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경제연합 투자협정(이하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과 2011년 한-벨기에 BIT 위반을 주장하였으며, 자의적인 과세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한-벨기에 조세협정 위반을 주장하였다.¹⁹⁾

(2) 한국의 주장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에 관한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서 한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의 유죄판결 때문에 매각 승인이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하였으며, 과세 처분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²⁰⁾ 특히 LSF-KEB를 제외한 다른 중재신청인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제기된 과세 문제는 모두 국내법원에서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¹⁾

2. 중재판정의 주요 쟁점

(1) 관할권 문제

중재판정부가 검토한 관할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1976년 한

18) 한국은 1967년 3월 23일, 벨기에는 1970년 9월 26일 ICSID 협약에 가입하였다.

19)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paras. 1-2.

20) *Ibid.*, paras. 13-16.

21) *Ibid.*, para. 16.

-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한 관할권 성립 여부에 관한 문제이며, 둘째는 2011년 한-벨기에 BIT에 근거한 관할권 성립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한 관할권 성립에 관한 주장은 본래 신청인(론스타)이 중재를 신청하면서 제기했던 내용은 아니고, 이를 신청인이 처음 언급한 것은 2차 준비서면(한국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Sur-Reply))에서였지만, 중재판정부는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한 관할권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²²⁾

1)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한 관할권 성립 여부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먼저 문제된 것은 론스타가 행한 투자가 동 협정 제3조 제1항의 보호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 제3조 제1항에서는 보호대상 투자를 농업, 제조업, 광업, 임업, 통신 및 관광 분야(in the field of agriculture, industry, mining, forestry, communications and tourism)라는 6가지 분야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²³⁾ 이 6가지 분야 중에서 “industry”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는데, 론스타는 이 단어가 제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건설, 부동산 등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다.²⁴⁾

이에 대해 한국은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이 보호대상인 투자를 좁게 정의하고 있다고 이해하면서 론스타의 투자가 위 6가지 분야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²⁵⁾ 또한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이 6가지 분야에 한정해서 투자를 정의한 이유와 관련하여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전까지 해외투자 유치에 제한을 두고 있었고, 은행업,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에서 외국기업이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의 일이라고 설명하였다.²⁶⁾

중재판정부는 제3조에서 말하는 “industry”는 일반 투자, 은행업, 부동산 등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할 만큼 넓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6가지 분야의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industry”의 예시로 나머지 5가지 분야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가지 분야가 모두 위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열거되어 있다고 하였다.²⁷⁾ 따라서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해서는 은행업, 금융업, 부동산, 건설업 등에 대한 론스타의 투자에 관하여 중재판

22) *Ibid.*, paras. 256-257.

23)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 제3조 제1항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the term “investments” shall comprise every direct or indirect contribution of capital and any other kind of assets, invested or reinvested in enterprise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industry, mining, forestry, communications and tourism.”

24)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para. 260.

25) *Ibid.*, para. 267.

26) *Ibid.*, para. 264.

27) *Ibid.*, paras. 280, 284.

정부의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²⁸⁾

또한 신청인들은 2011년 한-벨기에 BIT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따른 지속적인 보호(continuous protection)가 투자자에게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²⁹⁾ 2011년 한-벨기에 BIT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조약의 발효와 함께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종료되고 이 조약으로 대체(terminated and replaced)되었는데, 룩스타는 “대체(replaced)”라는 용어에 주목하여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상 보호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주장한 것이었다.³⁰⁾ 그러나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룩스타가 한 투자는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룩스타의 주장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이 문구가 1976년 한-벨기에 협정상 보호대상이 아닌 투자에 대해서 소급해서 보호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면개정된 2011년 한-벨기에 BIT에 따른 투자 보호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³¹⁾

2) 2011년 한-벨기에 BIT에 근거한 관할권 성립 여부

2011년 한-벨기에 BIT에 따른 관할권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룩스타가 문제삼은 한국의 행위가 대부분 2011년 한-벨기에 BIT가 발효한 2011년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룩스타의 중재 신청에 대해 시간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temporis*)이 성립하지 않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8조에 따라 조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1년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2011년 한-벨기에 BIT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³²⁾ 중재판정부도 한국과 같은 입장이었으며, 외환은행 주식매각과 관련된 분쟁 중에서 2011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한-벨기에 BIT가 적용될 수 없고, 2011년 3월 27일 이후에 이루어진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한국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만 2011년 한-벨기에 BIT에 근거하여 관할권이 성립한다고 하였다.³³⁾ 또한 과세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2011년 이후에 이루어진 조세 평가 부분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³⁴⁾

28) *Ibid.*, para. 289.

29) *Ibid.*, para. 271.

30) 2011년 한-벨기에 BIT 제12조 제4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발효와 함께 1974년 12월 20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은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Agreement, the Agreement on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Belgium, and the Grand-Duchy of Luxembourg, signed on 20 December 1974 at Brussels, shall be terminated and replaced by the present Agreement).”

31)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para. 283.

32) *Ibid.*, paras. 30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8조 (조약의 불소급) “별도의 의사가 조약으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조약 규정은 그 발효 이전에 당사국에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 또는 없어진 사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33)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para. 321.

34) *Ibid.*, para. 322.

론스타는 2011년 이전 외환은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가 정치적으로 주도된 괴롭힘, 협박, 징벌적 조치로 이루어진 복합행위(composite act) 및 계속행위(continuing act)에 해당하기 때문에 2011년 한-벨기에 BIT의 적용이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³⁵⁾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일련의 행위가 복합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1년 이후의 행위가 일련의 행위와 구별되는 법적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2011년 이후 한국의 행위는 반복적인 행위일 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복합행위는 아니라고 하였다.³⁶⁾ 또한 계속행위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론스타가 복잡한 사실 및 법적관계를 너무 단순화하여 이해한 것이며 계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³⁷⁾

3) 검토

관할권에 대한 결정에서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약 및 2011년 한-벨기에 BIT에 근거하여 2011년 3월 27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관할권이 성립한다고 하였으며,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2011년 한-벨기에 BIT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³⁸⁾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본안에서 다룰 내용은 (i)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매각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부당한 개입 관련 청구, (ii) 2011년 론스타 배당금에 대한 과세 관련 청구, (iii) 2011년 이후 다양한 조세 분쟁 관련 청구라고 정리하였다.³⁹⁾ 따라서 중재판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i) 관할권 문제, (ii) 과세 관련 문제, (iii)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금융위원회의 행위에 관한 문제라는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관할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부분과 관련하여 한국은 1990년대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의 촉진 및 지원보다는 이를 규제 및 관리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상황이 바뀌었으며, 1993년에 외국인투자 자유화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고, OECD 가입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1998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외국인투자의 제한업종이 다수 개방되었다.⁴⁰⁾ 이와 같은 시대에 따른 투자

35) *Ibid.*, paras. 305, 325; 복합행위 및 계속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UN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이하 ‘ILC 국가책임초안’)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책임초안 제14조 “The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by an act of a State not having a continuing character occurs at the moment when the act is performed, even if its effects continue.”

국가책임초안 제15조 “The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by a State through a series of actions or omissions defined in aggregate as wrongful occurs when the action or omission occurs which, taken with the other actions or omissions, is sufficient to constitute the wrongful act.”

36)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paras. 354-355.

37) *Ibid.*, para. 357.

38) *Ibid.*, para. 372.

39) *Ibid.*

4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외국인투자자유화추진방안”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29&pageFlag=&sitePage=1-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1998, pp.98-101.

유치 정책의 변화가 1974년 체결되어 1976년에 발효한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과 2006년에 체결되어 2011년에 발효한 2011년 한-벨기에 BIT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서는 보호대상인 투자를 좁게 정의하고 있는 반면, 2011년 한-벨기에 BIT에서는 투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⁴¹⁾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2011년 한-벨기에 BIT와 1976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모두 근거하여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1년 한-벨기에 BIT에 근거하여 2011년 3월 27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두 조약상 관련 문구의 충실한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과세 관련 청구

1) 분쟁당사자의 주장

론스타는 미국 및 버뮤다에 소재하고 있는 론스타를 한국에서 취득한 자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본 것이 자의적이고 한-벨기에 조세협정에 위반한 과세이므로 이는 2011년 한-벨기에 BIT 위반이며, 세금 산정 방식도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⁴²⁾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행위가 2011년 한-벨기에 BIT 제2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하며,⁴³⁾ 투자유치국(한국)이 (i) 신청인(론스타)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고, (ii) 신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으며, (iii) 자의적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iv)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강압을 행사함으로써 동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⁴⁴⁾ 이 밖에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포괄적 보호조항에 따른 의무에 위반하였고, 불법적인 수용에 해당하며, 자유로운 송금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⁴⁵⁾

41) 2011년 한-벨기에 BIT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 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

나. 회사 또는 사업체에 대한 지분·주식·회사채 및 소액형태를 포함한 그 밖의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

다. 금전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라.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기술공정·영업비밀·노하우에 관련된 권리를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

마. 천연자원의 탐사·배양·추출 또는 이용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

투자 또는 제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2)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para. 382.

43) 2011년 한-벨기에 BIT 제2조 제3항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한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의적 또는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44)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para. 383.

이에 대해 한국은 론스타가 이미 국내법원에서 세금 관련 문제를 모두 다투었다고 하였으며, 론스타가 문제 제기한 상황은 4개 한국기업에 갖고 있던 주식매각으로 얻은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이 벨기에 법인 대신 모기업에 부과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관련 청구를 하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하였다.⁴⁶⁾ 또한 해당 벨기에 법인들은 투자 수익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므로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조세협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론스타에 대해 부과한 세금은 적절했으며, 이는 국내법원 판결에도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⁴⁷⁾

2) 중재판정의 내용

과세 관련 청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이 적용한 실질과세원칙(Substance over Form Doctrine)이 한-벨기에 조세협정 및 2011년 한-벨기에 BIT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⁴⁸⁾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한국이 형식보다 실체를 우선시하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은 론스타 사건이 처음이 아니며, 이는 납세의무 관련 사실관계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⁴⁹⁾ 그리고 과세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결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과세 단계에 이르러서야 조약 위반 여부가 문제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2011년 한-벨기에 BIT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⁵⁰⁾

또한 한국 정부의 세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Newbridge Capital에 대한 과세 등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론스타에 대한 대우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었다고 할 수 없고,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으며, 통상의 납세의무는 수용에 해당할 수 없고, 주식 배당금을 세금 납부 없이 송금할 투자자의 권리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과세 관련 신청인(론스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⁵¹⁾

3) 검토

론스타는 텍사스 델러스에 기반을 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s)이며,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금을 모집한 후 론스타 III, 론스타 IV 등의 이름을 붙여서 미국 델라웨어와 버뮤다에 회사를 만든 후 그 산하에 직접 투자를 하여 자산의 소유주가 되는 특수목적회

45) *Ibid.*, paras. 384-386.

46) *Ibid.*, para. 387.

47) *Ibid.*, paras. 389, 434.

48) *Ibid.*, para. 390.

49) *Ibid.*, paras. 391, 410 (the doctrine forms "part of the basic rules for determining the facts that give rise to tax liability.").

50) *Ibid.*, para. 410 (It is only after the facts have been determined that the tax consequences are assessed, and it is only at the tax consequence stage, not the earlier fact-determination stage, that the Treaty provisions come into play.).

51) *Ibid.*, paras. 469, 477, 480, 488-489.

사(special purpose vehicle company)인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⁵²⁾

이 사건에서 론스타로 통칭하고 있는 8개 법인이 바로 그 특수목적회사이며, 이중 LSF-KEB Holdings SCA, LSF SLF Holdings SCA, HL Holdings SCA, Kukdong Holdings I SCA, Kukdong Holdings II SCA, Star Holdings SCA,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는 벨기에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등록 사무소 또한 벨기에에 있고,⁵³⁾ Lone Star Capital Investments S. à r. l은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설립되고 등록 사무소도 룩셈부르크에 있는 법인이다.⁵⁴⁾ 8개 법인 중 6개 벨기에 법인이 한국에서 외환은행, 스타타워, 스타리스, 극동건설 등에 투자를 했으며, 이 4개 한국기업에 갖고 있던 주식의 매각으로 얻은 양도차익 및 주식 배당금에 대한 과세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한국 정부는 벨기에 국적의 법인을 조세회피용 명목회사로 보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미국 론스타 본사에 대해 한-미 조세협정에 따른 세금을 부과한 것이었고, 중재판정부도 벨기에 법인이 별도의 사업 활동 및 수익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해 벨기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한국행정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⁵⁵⁾ 더구나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법 적용이 명백하게 부적절했다는 등의 재판의 거부(denial of justice)를 주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문제였으며, 중재판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⁵⁶⁾

(3)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금융위원회의 행위에 관한 청구

1) 분쟁당사자의 주장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치적인 압력과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하여 외환은행의 매각가격을 4억 3,300만 달러 인하하도록 하나금융을 압박하였고,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외환은행의 인수 승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보류하며 “두고 보는(Wait and See)” 전략을 취했다고 주장하였다.⁵⁷⁾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취득할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였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인수를 즉시 승인했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 지연은 정치적인 여론을 고려한 행위였다고 하였다.⁵⁸⁾

52) *Ibid.*, paras. 115-116.

53) SCA(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는 유한 및 무한책임사원을 갖는 벨기에 회사의 한 유형이다 (김희준, “론스타-한국정부간 ISD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p.858, 각주 14).

54)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paras. 32-39.

55) *Ibid.*, paras. 421-423.

56) 재판의 거부(denial of justice)는 투자유치국에서 재판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법을 심각하게 부적합한 방식으로 집행하거나, 법을 명확하게 악의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경우에 주장할 수 있다(*Robert Azinian, Kenneth Davitian, & Ellen Baca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 (AF)/97/2, Award, 1999, paras. 102-103).

57)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paras. 492, 507-508.

이에 대해 한국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에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고, 금융 분야를 감독할 권한과 은행의 소유권 이전을 승인할 권한 사이에 무엇이 우선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하였으며, 형사사건 진행으로 인해 야기된 법적 불명확성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승인이 지연된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⁹⁾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론스타의 심각한 범죄 혐의를 간과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⁶⁰⁾

2) 중재판정의 내용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지연이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해 두고 보는 전략을 취한 것인지, 아니면 론스타의 “먹고 튀는(Eat and Run)”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행한 시도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보았다.⁶¹⁾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승인 절차의 이행 시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보다 유연하게 정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외환은행의 매각은 한국에서 당시 세 번째로 큰 상업은행을 매각하는 사건이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⁶²⁾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연 그 자체보다는 지연에 부적합한 목적이 개입하였는지 여부라고 하였다.⁶³⁾

중재판정부는 한국이 주장한 법적 불확실성(legal uncertainty)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였으며, 먼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은 지분 매각이 취소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액수를 조건부 날인 증서로 남겨 놓은 채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⁶⁴⁾ 다음으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론스타의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다수의견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지연 전략이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⁶⁵⁾

이어서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지분의 하나은행 매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자의적 또는 차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2011년 한-벨기에 BIT를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결정 기한을 준수하고 신의(good faith)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

58) *Ibid.*, para. 512.

59) *Ibid.*, paras. 493, 507.

60) *Ibid.*, para. 528.

61) *Ibid.*, para. 523.

62) *Ibid.*, para. 524.

63) *Ibid.*, para. 526 (More importantly, the issue is not simply delay but improper motive for the delay.).

64) *Ibid.*, para. 535.

65) *Ibid.*, paras. 545, 549.

졌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저버렸다고 하였다.⁶⁶⁾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당시 가졌던 정당한 기대의 보호가 공정하고 공평한 원칙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s*)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투자유치국 정부의 진술 또는 보증이 있었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⁶⁷⁾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승인 절차의 이행 시점은 유연하게 정해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의 매각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매각가격을 인하하여 론스타가 먹고 튀는 이익에 대한 정치적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판단하였다.⁶⁸⁾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신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중재 피신청국인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론 내렸다.⁶⁹⁾ 즉,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은 금융위원회가 자신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매각가격을 인하하려고 하였으며,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자의적으로 그리고 악의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보아 한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⁷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위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위반, 불법적인 수용, 자유로운 송금 허용 의무 위반 등 론스타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에 대해 검토했으므로 다른 청구 내용을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⁷¹⁾

3) 검토

먼저 금융위원회의 행위가 한국에 귀속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금융위원회가 ILC 국가책임초안 제5조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실체라는 의견을 보였지만,⁷²⁾ 한 명의 중재재판관은 금융위원회가 ILC 국가책임초안 제4조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⁷³⁾ 또한 과세 관련하여 한국 법원이 국가기

66) *Ibid.*, para. 717.

67) *Ibid.*, para. 718.

68) *Ibid.*, para. 736 (In the view of the Tribunal majority, The FSC's "controlling rationale" for its delay tactics in the autumn of 2011 was to force a price reduction to placate political opposition to the size of Lone Star's "eat and run" profits.).

69) *Ibid.*, paras. 741, 751.

70) *Ibid.*, paras. 782, 791.

71) *Ibid.*, paras. 757, 765, 774, 778.

72) ILC 국가책임초안 제5조 Conduct of persons or entities exercising elements of governmental authority
The conduct of a person or entity which is not an organ of the State under article 4 but which is empowered by the law of that State to exercise elements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provided the person or entity is acting in that capacity in the particular instance.

73) ILC 국가책임초안 제4조 Conduct of organs of a State

1. The conduct of any State organ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at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whether the organ exercises legislative, executive, judicial or any other functions, whatever

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국세청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라고 보는 견해와 제5조에 따른 공권력을 행사하는 실체라고 보는 견해로 중재재판관의 견해가 나뉘었다.⁷⁴⁾

제4조와 제5조 중에 어느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의 문제된 행위가 한국에 귀속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행위의 국가귀속 문제를 더 다루지 않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ILC 국가책임초안 제4조와 제5조는 모두 비국가행위자 행위의 국가귀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두 조항의 적용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비국가행위자가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실체의 모든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지만, 제5조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실체라면 문제된 행위가 해당 실체가 위임받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위의 국가귀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된 행위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⁷⁵⁾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문제된 실체가 제4조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중재재판관 간에 의견대립이 있다면 설령 해당 실체가 제4조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해당 실체가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위임받았고, 문제된 행위가 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더해져야 중재판정의 내용이 더 명확했을 것이다.

또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보호, 적법절차의 준수, 계약상 의무 이행,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조치, 투명성 및 일관성, 강제 및 강압적인 조치 금지 등이다.⁷⁶⁾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주로 검토한 내용은 한국이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렸는지, 자의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신의에 따라 행동하였는지, 강압적인 조치가 있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섞여서 검토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두루뭉술하게 의무 위반을 결정한 듯 보이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중재판정부가 중점을 두고 판단한 사항은 승인 지연과 매각가격 인하의 동기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자의적이고 신의에 어긋난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였지만, 론스타 측이 매우 다양한 내용을 주장한 만큼 중재판정문에서 이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요건에 대한

position it holds in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and whatever its character as an organ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of a territorial unit of the State.

2. An organ includes any person or entity which has that statu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law of the State.

74)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paras. 676-677.

75) Luca Schicho, "Attribution and State Entities: Diverging Approaches in Investment Arbitration", *Journal of World Investment & Trade*, Vol.12, 2011, p.289.

76) 오현석, 이재우, 장석영, 「국제투자중재실무」, 법무부, 2022, p.168.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중재판정의 내용이 잘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개별의견에 대한 검토

세 명의 중재재판관 중에 두 명이 별도로 의견을 작성하였는데, 론스타 측이 선임한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 재판관은 개별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 측이 선임한 브리짓 스텐(Britte Stern)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찰스 브라우어 재판관은 중재판정의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2011년 한-벨기에 BIT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이상 분쟁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론스타가 부담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 결정됐어야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⁷⁷⁾ 브리짓 재판관이 작성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항목을 나누어서 살펴본다.

1) 브리짓 스텐 재판관의 반대의견

브리짓 스텐 재판관은 중재판정의 내용 중 행위의 국가귀속 문제 및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 ILC 국가책임초안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⁷⁸⁾ 특히 ILC 국가책임초안 제2조에 따라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i) 문제된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고, (ii) 그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여야 하며, (iii) 행위와 결과(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순서에 따라 다수의견과 자신의 견해를 비교, 검토하였다.⁷⁹⁾

우선 행위의 국가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가 금융위원회에 귀속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문제인데, 브리짓 재판관은 지금까지 어떤 국제재판에서도 단순한 내용 전달 또는 대화에 근거하여 국가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없었으며, 이 사건에서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직접 전달한 내용이 없었고, 다수의견이 근거로 활용한 언론기사 등은 증거능력이 제한된다고 지적하였다.⁸⁰⁾ 즉, 금융위원회가 하나 금융에 매각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는 찾을 수 없고, 론스타에 지시를 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하였다.⁸¹⁾

다음으로 설령 금융위원회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국제위법행

77)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Concurring Opinion of Judge Charles N. Brower, para. 9.

78)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Dissenting Opinion of Judge Brigitte Stern, para. 4.

79) ILC 국가책임초안 제2조 Elements of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There is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when conduct consisting of an action or omission:

(a) is attributable to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and

(b) constitutes a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of the State.

80)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Dissenting Opinion of Judge Brigitte Stern, paras. 25, 29, 34.

81) *Ibid.*, para. 60.

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브리짓 재판관의 견해였으며, 브리짓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은행업 전반을 관리 감독할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경시하고 있고, 규제기관의 행위였다는 점 또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기록도 금융위원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지 않고,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여론을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⁸²⁾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가 한국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브리짓 재판관은 지적하였다.⁸³⁾ 심각한 금융범죄를 저지르면서 론스타는 은행법 제15조에 따라 은행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었고,⁸⁴⁾ 사실적 인과관계(factual causation)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정법(but-for test)이므로 이를 적용해보면 금융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론스타는 서둘러서 주식을 매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브리짓 재판관은 론스타가 입은 손해는 론스타의 금융범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⁸⁵⁾ 또한 론스타는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에 따라 매각가격 인하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금융위원회의 강압과 매각가격 인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⁸⁶⁾

2) 검토

브리짓 스텐 재판관이 작성한 상세한 반대의견은 이 사건에 대한 ILC 국가책임초안의 적용방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해석에서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브리짓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금융위원회의 강압을 오로지 어림짐작으로만 확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금융위, 하나금융-론스타에 가격 인하 ‘압박’”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언급하고 있다.⁸⁷⁾ 이 기사를 찾아보면, “인수가격 인하를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는 명백하게 압박이 있었다기보다는 그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강압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브리짓 재판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⁸⁸⁾

82) *Ibid.*, para. 63.

83) *Ibid.*, para. 94.

84)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85)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Dissenting Opinion of Judge Brigitte Stern, para. 107.

86) *Ibid.*, para. 117.

87) *Ibid.*, para. 35.

88) 이미란, “금융위, 하나금융-론스타에 가격 인하 ‘압박’”, 『연합인포맥스』, 2011.11.21.자, 접속일 2023.1.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3/0002044402?sid=101>.

또한 다른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론스타는 대주주부적격판정을 받고 10% 이상 소유하고 있던 외환은행의 주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있었으며,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매수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⁸⁹⁾ 매각가격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외환은행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가격 재협상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었다.⁹⁰⁾

이 같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고 양측이 제출한 각종 증거와 증언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의 압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브리짓 재판관의 견해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5) 소결

결국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매각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한국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 즉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일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론스타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인하한 매각가격 4억 3,300만 달러로 인한 손해에 론스타와 한국이 동등하게 기여했다고 보아 손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미화 2억 1,650만 달러를 양측에 동등하게 분배하였다. 따라서 한국이 론스타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양 당사자는 각자가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고 중재비용은 동등하게 부담하라고 명하였다.⁹¹⁾

다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중재재판관 3명 간에 의견은 사뭇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투자분쟁해결의 중재판정에서 반대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는 약 8%에 해당할 정도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론스타 사건에서 개별의견과 반대의견이 모두 제시된 점은 이 사건이 그만큼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의미일 것이다.⁹²⁾ 또한 그만큼 하나금융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행위에 관한 청구 부분은 증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의견 및 개별의견이 중재판정의 결과 또는 구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실이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의

89) 문희철, “외환은행 매각 급물살”, 『매경이코노미』, 2011.10.17.자, 접속일 2023.1.31., <https://www.mk.co.kr/economy/view/2011/670727>; 하남현,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탄력받는다”, 『헤럴드경제』, 2011.10.18.자, 접속일 2023.1.3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1018000394>.

90) 손일선, 전정홍, 이현정, “외환銀 주가 ‘반토막’ 가격협상 불가피”, 『매일경제』, 2011.10.6.자, 접속일 2023.1.31., <https://www.mk.co.kr/news/economy/5007801>; 박민규,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가 얼마나 깎을까?”, 『아시아경제』, 2011.11.30.자, 접속일 2023.1.3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3008511008876>.

91)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para. 948; 한국 정부가 2022년까지 론스타 사건을 위해 지출한 액수는 약 4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이 부담하게 될 중재비용에는 중재재판관 선임 비용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지현, “론스타·다야니 등 ISDS 대응에 혈세 685억원 지출”, 『연합뉴스』, 2022.10.5.자, 접속일 2023.1.31.,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4167000002?input=1195m>).

92)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2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urrent and Preferred Practices in the Arbitral Process”, 2012. p.38.

권위를 떨어트리거나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IV.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절차적인 문제

1. 중재판정 선고가 늦어진 이유

영국 국제법 및 비교법 연구소(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의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ICSID 중재에서 절차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4.6년이다.⁹³⁾ 그러나 론스타 사건은 2012년 5월 22일 중재가 제기된 후 중재판정이 나오기까지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국제투자중재 사건의 누적으로 인해 오늘날 중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론스타 사건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에 해당한다. 이처럼 론스타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이 오랜 시간이 걸려 선고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론스타 사건에 대한 최종변론은 2016년 6월 진행되었으며, 중재판정부의 추가 질의가 없다면 이후 절차의 종료는 선언되는 것이 원칙이다.⁹⁴⁾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2022년 6월 29일이 될 때까지 절차종료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사건이 복잡하기도 했지만, 절차가 지연된 데에는 의장중재인의 건강 악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3월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Johnny Veeder)가 사임하면서 중재판정부에 결원이 생겼다.⁹⁵⁾ 이에 따라 중재절차는 중지되었고,⁹⁶⁾ 2020년 6월 윌리엄 이안 비니(William Ian Binnie)가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되었다.

ICSID 중재절차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결원 충원 후 절차는 결원이 발생했던 때에 이르렀던 절차부터 재개되며,⁹⁷⁾ 론스타 사건은 이미 구술심리까지 모두 진행된 상태에서 절차

93)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Empirical Study: Costs, Damages and Duration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2021, pp.32-33.

94) 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절차의 종료

(1) 당사자들의 사건 관련 주장이 완료되는 경우, 절차의 종료선언이 있어야 한다.

(2) 예외적으로, 판정부는 판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혹은 일부 특정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지극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95) 박재현, “론스타-한국 ISD 의장중재인 사임…판정 선고 늦어질 듯”, 『연합뉴스』, 2020.3.6.자, 접속일 2023.1.31.,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6135800004?input=1195m>; 이인혁, “론스타 ISD 재판장 말았던 조니 비더 지병으로 별세”, 『한국경제신문』, 2020.3.10.자, 접속일 2023.1.3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3109729i>.

96) ICSID 중재절차규칙 제10조 판정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의 절차

(2) 사무총장이 판정부의 결원에 관해서 통지하는 때, 절차는 중지되며 결원이 충원될 때까지 중지된 상태를 유지한다.

97) ICSID 중재절차규칙 제12조 결원 충원 후 절차의 재개

가 재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처음 검토하는 새로운 의장중재인은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새로운 의장중재인은 질의응답기일의 진행을 요청하였고 2020년 10월에 새로운 의장중재인의 질문에 양측 당사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화상회의가 진행되었다.⁹⁸⁾ 이후 2022년 6월 29일이 되어서야 절차종료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이런 이유에서 절차가 길어졌던 것이다. 중재판정은 절차종료 후 120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은 2022년 8월 31일에 내려졌다.⁹⁹⁾

2. 중재판정에 대한 엇갈린 견해

중재판정부는 한국이 론스타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⁰⁰⁾ 이는 한화로 약 3,000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이와 같은 중재판정 내용을 두고 선방했다는 견해와 잘못된 판정이라는 엇갈린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¹⁰¹⁾

이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론스타가 이 사건에서 청구한 금액은 미화 46억 8,000만 달러였으며 이 중 약 4.6%에 대해서만 한국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론스타가 제기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및 가격 인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의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을 뿐이고, 다른 쟁점에 대해서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론스타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는 이유는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배상금과 중재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투자중재는 이처럼 중재의 피신청인이 국가이므로 유리한 중재판정이 나오지 않는 한 그 나라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제투자중재가 애초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얘기하지만, 1987년부터 2021년 말까지 진행된 사건의 중재판정 결과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중재 피신청국(투자유치국)에 유리한 중재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38%로 그 비율이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판정이 나오는 비율(28%)보다 높다.¹⁰²⁾ 따라서 국제투자중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판정부의 결원이 충원되는 즉시 결원이 발생하였던 때에 이르렀던 시점에서부터 절차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이 선정된 중재인은 구술절차가 이미 개시되었다고 해도 구술절차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98) 법무부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2022년 8월 31일.

99) ICSID 중재절차규칙 제46조 판정 준비

판정(개별의견 혹은 반대의견을 포함함)은 절차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정부는 달리 판정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이 기간을 추가해서 6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100)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para. 948.

101) 김효정, “론스타 6조→2800억 배상은 선방?...” 잘못된 판단“ 돌로 나뉜 법조계”, 「머니투데이」, 2022.9.1.자, 접속일 2023.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3117490969003>.

102) IIA Issues Note, “Facts on Investor - State Arbitrations in 2021: With a Special Focus on Tax-Related ISDS Cases”, UNCTAD, Issue 1, 2022, p.4; 영국 국제법 및 비교법 연구소(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에서 2020년 5월까지 433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총 54%의 사건에서 중재 피신청국이 유

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국제투자중재의 배상액은 점차 금액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평균 배상액은 미화 4억 3,75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국제투자중재에서는 배상액이 큰 사건들이 많다.¹⁰³⁾

3. 론스타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 선고 이후의 결과

(1) 중재판정의 구속력

중재판정이 선고되면 이는 최종적이고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¹⁰⁴⁾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중재판정은 잘 이행되고 있다.¹⁰⁵⁾ 또한 ICSID 협약 제54조 제1항에서 각 계약국은 ICSID 중재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자국 법원의 최종 판결과 같이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중재판정을 받은 국가가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는 ICSID 협약의 계약국인 제3국 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¹⁰⁶⁾

따라서 한국은 론스타 사건의 절차가 모두 종결되면 중재판정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론스타 측에서 ICSID 협약의 계약국인 제3국의 법원에서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2) 중재판정의 오류 정정 신청

중재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의 오기, 오산 또는 기타 오류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¹⁰⁷⁾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에서 배상금에 이자액이 과다 산정되었고, 특정 시기의 이자가 중복계산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2년 10월 15

리한 판정을 받았고, 44%의 사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유리한 판정을 받았다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supra* note 12, p.26).

103)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supra* note 93, p.28 (위 액수는 역대 가장 큰 액수의 배상 판정이 나온 사건인 Yukos 사건은 제외한 평균 금액이다).

104) ICSID 협약 제53조 제1항

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본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어떠한 상소 또는 기타 구제수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중지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판정의 내용을 따르고 준수해야 한다.

105)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Corporate attitudes and practices 2008", 2008, pp.13, 16.

106) ICSID 협약 제54조 제1항

각 계약국은 본 협약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그것이 당해 국가법원의 최종판결과 같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그 판정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의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107) ICSID 협약 제49조 제2항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판정부는 타방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누락되어 자신의 판정에서 결정하지 않았던 문제를 결정할 수 있고, 판정에 있는 오기, 오산 또는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를 정정하여야 한다.

일 ICSID 사무총장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¹⁰⁸⁾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배상금액이 일부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4.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

한국 정부는 론스타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의 취소 신청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¹⁰⁹⁾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에 대해서는 ICSID 협약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¹¹⁰⁾ 또한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5가지 사유로 제한되어 있으며, (i)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설치되지 않은 경우, (ii)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명백히 벗어난 경우, (iii) 중재인의 부패가 있었던 경우, (iv) 근본적인 절차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v) 중재판정에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¹¹¹⁾

이처럼 취소 신청의 기한이 있고, 취소 신청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중재판정의 확정성(최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¹¹²⁾ 또한 중재판정의 취소 절차는 본안 사항을 다시 판단하여 중재판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 또는 항소절차가 아니며, 절차적으로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재판정은 한번 내려지면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안에서 이미 다루어진 내용에 대해 다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취소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기존에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중재판정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만,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에 대한 결정 중에서 취소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받아들여진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¹¹³⁾ 또한 해당 중재판정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는 것은 분쟁당사자가 같은 사건을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¹¹⁴⁾

108) 법무부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2022년 10월 15일.

109) 법무부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2022년 8월 31일.

110) ICSID 협약 제52조 제2항

신청은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다만, 부패를 이유로 취소가 신청된 때, 해당 신청은 부패를 알게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지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111)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

어느 쪽 당사자이든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로써 사무총장 앞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a) 판정부가 적절히 설치되지 않은 경우
- (b) 판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명백히 벗어난 경우
- (c) 판정부 중재인의 부패가 있었던 경우
- (d) 근본적인 절차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e) 판정에서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112) 강병근, 「ICSID 중재제도 연구」, 법무부, 2017, pp.321-322.

113) ICSID, “The ICSID Caseload - Statistics”, Issue 2022-2, 2022, p.16.

이처럼 취소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높지 않으므로 취소를 신청하려고 할 때는 취소 신청의 결과가 미치는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5가지 취소 신청 사유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신청해볼 기회가 사라지는 만큼 취소 신청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겠지만, 취소 절차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결정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V. 결론

한국을 상대로 처음 제기된 국제투자중재 사건인 론스타 사건에 대한 ICSID 중재판정이 2022년에 나왔으며, 아직 취소 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복잡하고 다사다난했던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오래 기다렸던 사건인 만큼 중재판정의 내용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분쟁당사자 양측 준비서면과 중재판정문이 모두 공개되면서 그 내용과 절차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진행된 론스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주요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체적 및 절차적인 쟁점을 ICSID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ICSID 중재판정의 내용은 관할권 문제, 과세 관련 청구 문제, 하나금융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금융위원회의 행위에 관한 청구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중재판정의 내용을 정리한 후 각각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재재판관 개별의견 중에서 브리짓 스텐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통해 중재판정의 결론이 나온 배경과 재판관 간의 의견대립도 확인하였다. 특히 사건의 핵심인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금융위원회의 행위에 관한 청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분쟁당사자 간에 또는 중재재판관 간에 법리적인 견해대립보다는 증거에 대한 해석에서 기인한 견해 차이가 중재판정의 결론까지 이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중재판정의 선고가 늦어진 이유, 중재판정 결과에 대한 견해 차이, 중재판정 이후의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의 현황과 절차규칙 등을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재판정 취소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다방면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날 매년 수십 건의 새로운 국제투자분쟁해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114) 김용일, 오현석, “ICSID 중재판정의 취소를 통한 불복”, 『중재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1, p.17; ICSID 중재절차규칙 제55조 제1항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가 판정의 일부 혹은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 어느 쪽 당사자이든지 해당 분쟁을 새로운 판정부에 다시 제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까지 누적된 알려진 사건 수가 1,229건일 정도로 국제투자중재가 투자분쟁의 해결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¹¹⁵⁾ 론스타 사건 이후로 한국을 상대로 제기되는 사건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도 다수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¹¹⁶⁾ 특히 론스타 사건은 아직 취소 신청이 남아있고, 뒤이어 다른 사건들에 대한 중재판정이 계속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투자중재의 사전 준비와 실체적 및 절차적인 대응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기존 사건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론스타 사건과 그 이전에 다야니 사건과 같이 한국이 불리한 중재판정을 받을 때마다 국제투자중재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¹¹⁷⁾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만 한국이 체결한 국제투자협정에 근거하여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 세계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도 한국이 체결한 국제투자협정에 근거하여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제투자협정에 따른 국가의 해외투자 보호 의무는 쌍방 국가의 국민 및 기업에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제투자중재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 절차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새롭게 제기된 국제투자분쟁해결 사건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115) IIA Issues Note, *supra* note 102, p.1.

116) 대표적으로 *Elliott Associates, LP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1), *Mason Capital LP and Mason Management LLC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5), *Schindler Holding AG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9-44), *Fengzen Min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20/26) 등 한국을 상대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다수의 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반대로 *Korea Western Power Company Limited v. The Republic of India* (PCA Case No. 2020-06) 등 투자자인 한국기업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해결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117) *Mohammad Reza Dayyani,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UNCITRAL, PCA Case No. 2015-38, 2018.

참고문헌

- 강병근, 「ICSID 중재제도 연구」, 법무부, 2017.
- 김성룡, 안건형, “상사중재와 투자조약중재에 관한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
- 김용일, 오현석, “ICSID 중재판정의 취소를 통한 불복”, 「중재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1.
- 김희준, “론스타-한국정부간 ISD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1998.
- 신희택,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투자중재 - ICSID 협약에 의한 투자협정중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오현석, “투자의 적법성과 ISD 관할에 관한 연구 - 론스타 사건을 중심으로 -”, 법조, 제69권 제1호, 법조협회, 2020.
- 오현석, 이재우, 장석영, 「국제투자중재실무」, 법무부, 2022.
- 정혜련, “론스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사건에 대한 소고 - 론스타의 ISD 과정과 우리정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제5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Empirical Study: Costs, Damages and Duration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2021.
- ICSID, “The ICSID Caseload - Statistics”, Issue 2022-2, 2022.
- IIA Issues Note, “Facts on Investor - State Arbitrations in 2021: With a Special Focus on Tax-Related ISDS Cases”, UNCTAD, Issue 1, 2022.
- Luca Schicho, “Attribution and State Entities: Diverging Approaches in Investment Arbitration”, Journal of World Investment & Trade, Vol.12, 2011.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Corporate attitudes and practices 2008”, 2008.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2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urrent and Preferred Practices in the Arbitral Process”, 2012.
- LSF-KEB Holdings SCA v. Hana Financial Group, Inc.*, ICC Case No. 22221/CYK/PTA.
-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Award, 2022.

Mohammad Reza Dayyani, et al v. The Republic of Korea, UNCITRAL, PCA Case No. 2015-38, 2018.

Robert Azinian, Kenneth Davitian, & Ellen Baca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 (AF)/97/2, Award, 1999.

김효정, “론스타 6조→2800억 배상은 선방?...” 잘못된 판단” 돌로 나뉜 법조계”, 「머니투데이」, 2022.9.1.자, 접속일 2023.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3117490969003>.

문희철, “외환은행 매각 급물살”, 「매경이코노미」, 2011.10.17.자, 접속일 2023.1.31., <https://www.mk.co.kr/economy/view/2011/670727>

박민규,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가 얼마나 깎을까”, 「아시아경제」, 2011.11.30.자, 접속일 2023.1.3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3008511008876>.

박재현, “론스타-한국 ISD 의장중재인 사임...판정 선고 늦어질 듯”, 「연합뉴스」, 2020.3.6.자, 접속일 2023.1.31.,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6135800004?input=1195m>

법무부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2022년 8월 31일.

법무부 보도자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2022년 10월 15일.

손일선, 전정홍, 이현정, “외환銀 주가 ‘반토막’ 가격협상 불가피”, 「매일경제」, 2011.10.6.자, 접속일 2023.1.31., <https://www.mk.co.kr/news/economy/5007801>

이미란, “금융위, 하나금융-론스타에 가격 인하 ‘압박’”, 「연합인포맥스」, 2011.11.21.자, 접속일 2023.1.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3/0002044402?sid=101>.

이인혁, “론스타 ISD 재판장 말았던 조니 비더 지병으로 별세”, 「한국경제신문」, 2020.3.10.자, 접속일 2023.1.3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3109729i>.

이지현, “론스타·다야니 등 ISDS 대응에 혈세 685억원 지출”, 「연합뉴스」, 2022.10.5.자, 접속일 2023.1.31.,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4167000002?input=1195m>

하남현,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탄력받는다”, 「헤럴드경제」, 2011.10.18.자, 접속일 2023.1.3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101800039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외국인투자자유화추진방안”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29&pageFlag=&sitePage=1-2-1>).

ABSTRACT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of the Lone Star Case With a Focus on the ICSID Arbitral Award

Sok Young CHANG

An ICSID award on Lone Star case has been rendered finally on August 31st, 2022 after almost ten years since the Lone Star Funds submitted the request for arbitr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in 2012. The Lone Star case is the firs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case brought against Korea, and this case, also known as “eat and run” case, has given rise to heated debates for years. Moreover, as the ICSID tribunal has ordered Korea to pay the Lone Star Funds the sum of USD 216.5 million plus interest in the award, this case has become once again the subject of controversy.

Any arguments and evidence submitted by the parties in dispute have not been disclosed until recently, however, as the memorials and the award are now open to the public, it has become possible to realize the assertions of each party and the decisions of the tribunal in detail. Therefore,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main issues of the Lone Star case with a focus on the ICSID award. By examining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of the case one after the other, it might be able to understand the whole picture of the case and prepare for the remaining procedures of this case and other upcoming cases as well.

Key Words : Lone Star cas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ICSID, Investor-State Arbitration, Arbitral Award